

촬영허가서								
①신청인	(대표자명)		②촬영명					
③연락처			④촬영내용					
허가내용	⑤ 신청대상 공능	⑥ 대상장소 (전각 등)	⑦ 촬영일자	⑧ 촬영시간	⑨ 촬영인원	⑩ 촬영요금	⑪ 입장료	
				~	명(모델 명포함)	원	원	
				~	명(모델 명포함)	원	원	
	⑫ 촬영장비	카메라장비						
		조명장비						
음향장비								
기타소품								
⑬허가조건	1.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사업자)는 촬영시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5. 별표3의 ⑩ 동영상촬영 중 영화 등 촬영은 공능유적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능유적기관을 피보험인으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전까지 해당 공능유적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할 것 6. 촬영의 세부사항은 공능유적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7.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공능유적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 8.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공능유적기관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음 9. 신청자(사업자)는 공능유적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10.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 나. 사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11. 건물내부, 박석(薄石: 평평한 돌) 월대(月臺: 넓은 기단 형식의 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장비 반입 금지 12. 장비 및 소품은 시설물과 1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 및 보관 13. 박석(薄石: 평평한 돌) 및 월대(月臺: 넓은 기단 형식의 대)에 촬영을 위한 장비 배치를 금함 14.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 15.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 금지 16.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⑭기 타								
「공·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능유적본부장 (인)								